

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 산정 기준

(제4-20조제10호 관련)

“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으로서 제2호에서 정한 판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으로서 제1호에서 정한 판매금액”

1.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제외한 금액.

가.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1조에 따른 중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중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에 한한다.

마. 투자자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가 투자권유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 낮은 집합투자증권

바.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2. 해당 사업연도에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나.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만,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제외한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전연도말 기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로부터 최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속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집합투자기구의 선정원칙을 공시하고, 해당 원칙에 따라 일부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연도 내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선정사유를 공시한 집합투자기구